

식용가능 한약재 건강보조식품 인정된다

옻닭·동충하초·상황버섯등도 가공식품 제조 허용전망

내년부터는 특정한 품질의 식품을 만들기 위해 예외적으로 제조기술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의 제조 및 가공방법이 권장사항으로 전환되며 식품의 원부자재 사용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옻닭, 유황오리 등 전통식품과 동충하초, 상황버섯 등 새로이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에 대해 가공식품으로의 허용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식용가능한 한약재도 건강보조식품(성분)으로 확대 지정될 전망이며 건강보조식품의 인정 및 품목제조신고 업무를 전문성있는 기관(식약청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도록 함으로써 건강식품산업 활성화와 기능성식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농민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검사실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 인삼제품의 영업 및 품목신고와 관련한 업무가 일원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인삼제품류·일부과자류를 제외하고는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식품의 제조형태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되 의약품과 혼동,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확정 발표한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관련 규제개선방안'은 그동안 획일적인 가공방법과 원료배합기준의 설정, 지나친 원료사용 제한과 시설기준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해 다양한 제품생산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민들의 식관습에 맞춰 식품의 원부자재 사용범위를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옻닭·유황오리등 전통식품과 동충하초·상황버섯 등 새로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에 대해 가공식품으로의 허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위생이나 안전상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제조형태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용도 식품등 현재 허용되는 식품의 종류를 다양화해 정제나 캡슐 형태의 식품제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의 제조형태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되 의약품과 혼동·오인되지 않도록 표시의무를 강화한다.

□ 건강보조식품의 지정 및 관리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될수 있도록 건강보조식품의 인정요건을 완화해 천연비타민과 식용 가능한 한약재등에 대해 건강보조식품(성분)등으로 확대 지정한다.

건강보조식품의 종류와 특정성분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또는 유용성 표시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식품 및 포장재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

인삼류 자체검사 업체의 품질관리부서 책임자가 다

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삼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는 규제를 정비한다.

◆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업체의 시설기준

농어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허가와 검사실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통식품제조업등에 확대 적용한다. 특히 집안에서 이뤄져온 전통식품이나 농어민들이 단순가공품을 만들때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및 검사실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복합가공을 하는 농산물제조업체의 경우 업종별 시설기준을 주 생산품목에 한정해 적용하고 비수기에 부분적으로 다른 품목을 생산할 때는 별도의 시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제3자의 가공시설을 빌려 위탁제조하는 것을 허용한다.

□ 인삼제품의 재분류 및 관리체계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인삼을 주원료로 인삼제품을 제조할 경우 '인삼산업법' 상의 영업 및 품목신고와 품질관리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 및 품목신고와 품질관리를 갈음한다. 이에따라 뿌리삼 제조업체가 인삼농축액·당침인삼·인삼분말 등의 제품을 제조할 경우 '인삼산업법' 상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국내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현황

약용작물 품종육성 현황

작물명	품종명	육성년도	육성기법	주요특성
침당귀	만추당귀	1998	분리	추대안전성, 다수
지황	지황호	1995	도입, 분리	초다수성
구기자	청양구기자	1997	돌연변이	대파, 다수, 내병
작약	의성작약	1994	분리	고품질
	태백작약	1996	분리	화훼겸용
	사곡작약	1997	분리	내병성, 다수
시호	장수시호	1997	분리	재래시호
	심개시호	1998	도입분리	삼도시호, 조숙, 고품질
결명자	명윤결명	1995	분리	다수성

종보호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모든 작물이 출원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있는 작물만 출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까지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된 작물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출원 가능성 있는 작물의 수를 추정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99년 현재 국내 품종보호 대상 작물은 벼·보리·옥수수 등 총27종, 약용작물의 경우는 품종보호대상 품목이 아직 없다.

우리나라가 전 작물로 품

지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된 작물은 참당귀, 의인, 지황, 구기자, 작약, 산약, 시호, 결명자, 토천궁, 맥문동, 백지 등 총11개 품목이다.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 만일 육성자가 다른나라에서도 품종보호를 받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받아야 하며, UPOV회원국의 보호품종이라 하더라도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종자산업법에서는 자

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하여는 당해 농민이 경영하고 있는 포장면적에 심을 수 있는 종자의 양까지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UPOV란?

UPOV란 식물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연맹으로서 1961년 파리에서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고 1968년 동 협약이 발효되면서 UPOV가 발족하게 되었다.

UPOV는 신품종의 보호조건, 보호내용, 최저 보호기간, 내국민대우 등의 기본적 원칙등을 협약으로 정하고 각국이 공통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하므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품종심사의 조화, 심사협력의 추진, 행정수속의 조화, 홍보, 보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UPOV 회원국은 당초 유럽의 국가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WTO/TRIP에서 식물품종에 대한 보호제도를 각국이 갖추도록 함으로써 식물품종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UPOV에의 가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 95년에 27개국이 회원이던 것이 99년 11월 현재 44개국으로 늘어났다.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도 가입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중에는 일본이 82년에, 중국이 99년에 가입되어 있다.